

검사필증(제13조 관련)

①	검사필증
② : 검사신청인 ③ : 형식번호 ④ : 합격번호 ⑤ : 검사유효기간 ⑥ : 검사원	
서명 (검사기관의 장) 직인	

<도안요령>

1. 가로 90mm 이상, 세로 60mm 이상의 직사각형 또는 지름 70mm 이상의 원형
2. 표시방법
 -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
 - ② 검사신청인(제조자의 명칭을 쓰되,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명칭, 정기검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)
 - ③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기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장소(위치)도 기입
 - ④ 합격번호(검사필증 번호)를 기입
 -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·월·일과 효력만료 연·월·일 기입
 - ⑥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
3. 기타
 - (1) 쉽게 지워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(2) 수출품 등의 경우에는 영문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.
 - (3) 검사의 종류,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.